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

(제정 2009.7.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보완관리의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명지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명지대학교 내의 모든 연구수행기관(연구소 및 센터 등)과 연구책임자 및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안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보안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보안사고, 위규자 및 신원특이자 처리에 관한 사항

4.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6.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안위원회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운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보안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학기획팀장이 된다.

⑤보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안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 2 장 보안등급 분류

제4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과제

가.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기술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그 밖에 제7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류 절차)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급 변경)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7조(연구수행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1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며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과제담당관 및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

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 참여 제한)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4.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사고의 보고)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책임) 연구수행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산학협력단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퇴직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한다.

6. 상기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